

◎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 - 07호

우편업무 규정 제3조 및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따라
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30일
강원지방우정청장

1. 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

가. 조정내역

총괄국	국 명	조정 전		조정 후	
		창구업무 취급시간		창구업무 취급시간	
		우편	금융	우편	금융
철원	철원근남	09:00 ~ 18:00	09:00 ~ 16:30	09:00 ~ 12:00	09:00 ~ 11:30
	철원자등	09:00 ~ 18:00	09:00 ~ 16:30	14:00 ~ 18:00	14:00 ~ 16:30

나. 조정일 : '23. 7. 3.

2. 존속기한

이 고시는 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익일(2023. 07. 04.)까지 유효